

보도시점 2026. 4. 30.(목) 10:00 / 배포 2026. 4. 30.(목) 08:30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범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범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하 노 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억~20억원	2.2 이상	90%~100%	18억~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억~9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15억~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2 미만	50%~75% 40%~50%	10억~15억원 4천만원~10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 맹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2.0%	4억~5억원	2.2 이상	1.8%~2.0%	4.5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1.6%	2억~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1.8%	3.5억~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0.8%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2 미만	1.0%~1.5% 0.1%~1.0%	2.5억~3.5억원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아 울 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4억~5억원	2.2 이상	180%~200%	4.5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2억~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0%~180%	3.5억~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2 미만	100%~150% 80%~100%	2.5억~3.5억원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대 리 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4억~5억원	2.2 이상	90%~100%	4.5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억~4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3.5억~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2 미만	50%~75% 40%~50%	2.5억~3.5억원 5백만원~25억원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를 일부 개선*한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

② 반복 범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

반복 범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범위반 가중 개정안(공통)]

기간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가중비율
과거 5년간	1회 이상 & 2점 이상	40% 초과~50% 이하
	2회 이상 & 3점 이상	50% 초과~70% 이하
	3회 이상 & 5점 이상	70% 초과~90% 이하
	4회 이상 & 7점 이상	90% 초과~100% 이하

* 하도급법은 '위반횟수 및 벌점 누산점수'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③ 감경 사유·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범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범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④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 (유통, 대리점) 기하기 →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 해당 등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5월 2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가맹거래정책과(가맹)/유통대리점정책과(유통·대리점)
- * 팩스: 044-200-5227
- * 전자우편: (하도급) tohsw@korea.kr, (가맹) jungwon1@korea.kr,
(유통) park4467@korea.kr, (대리점) ssongjw@korea.kr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황상우 (044-200-4952)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피계림 (044-200-4990)
		담당자	사무관	한정원 (044-200-4994)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태모 (044-200-4960)
		담당자	사무관	박정용 (044-200-4964)
			사무관	송지원 (044-200-4963)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생략)</p> <p>나.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u>100분의 50의 범위</u>에서 <u>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u> 가중하거나 감경한다.</p>	<p>부칙 <제2026-00호, 2026.07.00></p> <p>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p> <p>-----</p> <p>-----</p> <p>-----</p> <p>-----</p> <p>-----</p> <p>-----</p> <p>---100분의 100의 범위에서</p> <p>-----</p> <p>-----</p>

<과징금 고시>

현행	개정안																																																				
<p>IV. 과징금의 산정기준</p> <p>1. 기본산정기준</p> <p>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중대성의 정도</th> <th>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 <th>부과기준율</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2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0% 이상 80% 이하</td> </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이상 60% 미만</td> </tr> <tr> <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 40% 미만</td> </tr> </tbody> </table> <p>(단서 생략)</p> <p>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중대성의 정도</th> <th>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 <th>부과기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2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td> </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이상 9억원 미만</td> </tr> <tr> <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td> </tr> </tbody> </table>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p>IV. 과징금의 산정기준</p> <p>1. 기본산정기준</p> <p>나.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중대성의 정도</th> <th>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 <th>부과기준율</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2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90% 이상 100% 이하</td> </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5% 이상 90% 미만</td> </tr> <tr> <td rowspan="2">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이상 1.4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 이상 75%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이상 50% 미만</td> </tr> </tbody> </table> <p>(단서 현행과 같음)</p> <p>다.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중대성의 정도</th> <th>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 <th>부과기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2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억원 이상 20억원 이하</td> </tr> <tr> <td>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억원 이상 18억원 미만</td> </tr> <tr> <td rowspan="2">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이상 1.4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td> </tr> </tbody> </table>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0%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5% 이상 9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0% 이상 75% 미만	1.2 미만	4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2 미만	4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0%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5% 이상 9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0% 이상 75% 미만																																																			
	1.2 미만	4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2 미만	4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p>IV. 과징금의 산정</p> <p>2. 1차 조정</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p>	<p>IV. 과징금의 산정</p> <p>2. 1차 조정</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p>																																																				

현행	개정안
<p>과거 <u>3년</u>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 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u>3회 이상</u>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p>	<p>----- <u>5년</u> 간 ----- ----- ----- ----- <u>1회 이상</u> ----- ----- ----- ----- ----- ----- ----- -----</p>
<p>(1) 과거 <u>3년</u>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u>4점</u> 이상인 경우 : <u>100분의 50</u> 이내</p>	<p>(1) -- <u>5년</u> ----- ----- ----- <u>7점</u> ----- <u>100분의 90</u> 초과 <u>100분의 100</u> 이하</p>
<p>(2) 과거 <u>3년</u> 간 <u>4회</u>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u>2점</u> 이상인 경우 : <u>100분의 40</u> 이내</p>	<p>(2) -- <u>5년</u> -- <u>3회</u> ----- ----- ----- <u>5점</u> ----- <u>100분의 70</u> 초과 <u>100분의 90</u> 이하</p>
<p>(3) 과거 <u>3년</u> 간 <u>3회</u>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u>2점</u> 이상인 경우 : <u>100분의 20</u> 이내</p>	<p>(3) --- <u>5년</u> - <u>2회</u> ----- ----- ----- <u>3점</u> ----- <u>100분의 50</u> 초과 <u>100분의 70</u> 이하</p>
<p><u>(신 설)</u></p>	<p><u>(4) 과거 5년 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u></p>

현행	개정안
	<u>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50 이하</u>
<p>3. 2차 조정</p> <p>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이때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p> <p>(가) <u>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u></p> <p>(나) <u>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u></p>	<p>3. -----</p> <p>다. ----- -----.</p> <p>(1)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가) <u>위반행위의</u> ----- ----- ----- -----</p>

현행	개정안
<u><신설></u>	<u>부칙 <제2026-00호, 2026. 07. 00.></u> <u>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u> <u>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u>

<과징금 고시>

현 행	개 정 안
<p>II. 정의</p> <p>1. ~ 2. (생 략)</p> <p>3. <u>가맹본부의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u></p> <p>“<u>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u>”(이하 “<u>2차 조정</u>”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각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u>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재차 조정하는 것</u>을 말한다.</p> <p>4. ~ 10. (생 략)</p> <p>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p> <p>1. (생 략)</p> <p>2.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5년간 <u>2회</u>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u>3점</u>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IV. 과징금의 산정</p> <p>1. 산정기준</p> <p>가. ~ 나. (생 략)</p> <p>다. <u>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u></p>	<p>II. 정의</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가맹본부의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u></p> <p>“<u>가맹본부의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u>”(이하 “<u>2차 조정</u>”이라 한다)은 ----- <u>가맹본부의 조사협조 여부</u> -----</p> <p>-----.</p> <p>4. ~ 10. (현행과 같음)</p> <p>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p> <p>1. (현행과 같음)</p> <p>2. ----- <u>1회</u> -----</p> <p>----- <u>2점</u> -----</p> <p>-----</p> <p>IV. 과징금의 산정</p> <p>1. 산정기준</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p>

현 행	개 정 안
	<u>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u>
1)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범위로 조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 ----- ----- 50 <u>초과 100분의 70 이하</u>
2)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범위로 조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3) ----- ----- ----- 70 <u>초과 100분의 90 이하</u>
3)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범위로 조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4) ----- ----- ----- 90 <u>초과 100분의 100 이하</u>
3. 2차 조정 다음 가. 내지 라.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경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범위 내이어야 한다.	3. 2차 조정 ----- <u>가중 또는 감경사유</u> ----- ----- <u>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u> ----- ----- <u>더하거나 빼는</u> ----- ---. ---, <u>가중 또는 감경되는</u> ----- -----.
가. 조사·심의협조 등	가. 조사·심의협조 등
1)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 <u>조사·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 감경</u>
2)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나.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 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u>100분의 10 이내</u>, 다만 이 경우 위 가. 2)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이내에서 추가 감경 할 수 있다.</p>	<p>나.----- ----- - <u>100분의 10 이내 감경.</u> ----- <u>가.의</u>----- ----- -----.</p>
<p>다.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생략)</p> <p>1)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u>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u></p> <p>2) <u>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u></p> <p>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u>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u></p> <p>4) 위 1) 내지 3)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 률을 축소할 수 있다.</p>	<p>다.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현행과 같음)</p> <p>1) ----- <u>상당부분</u> ----- : <u>100분의 10 이내 감경</u></p> <p><삭 제></p> <p><삭 제></p> <p>2) -- <u>1)의</u> ----- ----- ----- -----.</p>
<p>라. <u>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 이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u></p>	<p><삭 제></p>
<p><신 설></p>	<p>라. <u>위반 가맹본부가 법 제12조의5(보복 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가중</u></p>

<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신·구조문 대비표 >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3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당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당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가맹금 규모*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가맹금 규모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 1건당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를 의미(단, 위반행위 건별로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 (현행과 같음)							

2. 나.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의 내용	0.3	(생략)	(생략)	(생략)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의 내용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관련가맹점사업자 수	0.2	(생략)	(생략)	(생략)	관련가맹점사업자 수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라.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역	위반행위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역	위반행위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단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단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u>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u>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u>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바.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 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 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호	지역적 범위	0.1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호	지역적 범위	0.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규모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규모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 <u>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 <u>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 <u>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					* (현행과 같음)								

2. 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행위(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당이득 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부당이득 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단	위반건수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건수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0.2	(생략)	(생략)	(생략)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가맹점 사업자의 전체 비용을 의미하며,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한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균 소요비용을 의미						* (현행과 같음)							

2. 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u>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u>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u>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단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단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 보복조치(법 제12조의5)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정도	0.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정도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가맹본부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정도	가맹본부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법 제12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당이득 발생 정도	0.3	(생략)	(생략)	(생략)	부당이득 발생 정도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련가맹점 사업자 수	0.2	(생략)	(생략)	(생략)	관련가맹점 사업자 수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관련가맹점사업자 수	0.3	(생략)	(생략)	(생략)	관련가맹점사업자 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파.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제6항)

현행					개정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 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 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중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중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중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0.1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중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중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중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 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직전</u>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직전</u>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직전</u>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별표 1]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산정기준의 <u>100분의 50</u>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할 수 있고, 감경의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p>	<p>부칙 <제2026-00호, 2026.7.00></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가. (현행과 같음) 나. ----- ----- -----<u>100분의 100</u>의 ----- ----- ----- ----- ----- -----.</p>

<과징금고시>

현 행	개 정 안
I. (생략)	I. (현행과 같음)
II. 정의	II.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관련 납품대금	4. (현행과 같음)
가. “관련납품대금”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 ----- -----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5.~13. (생략)	5.~13. (현행과 같음)
14. 조사가 개시된 날	14. (현행과 같음)
시행령 별표1 제1호의2의 “조사가 개시된 날”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제1호나목에서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III.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II.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2. (현행과 같음)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다. ----- 5년간 ----- ----- ----- ----- ----- ----- -----.

현행	개정안
<p>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p>	<p>----- ----- ----- ----- ----- <u>3점</u> ----- ----- ----- ----- ----- ----- -----.</p>
<p>3. III.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1의 <u>제1호의2</u>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10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3. ----- ----- <u>제1호나목에</u> ----- ----- ----- ----- ----- ----- ----- ----- ----- ----- -----.</p>
<p>IV.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생략)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다만, II.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위반행</p>	<p>IV.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을
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
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관련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
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
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
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0% 이상 2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0% 이상 18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2 미만	80% 이상 100% 미만

다. -----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2억5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
	1.2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2. (현행과 같음)

가. -----

현행	개정안
<p>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u>100분의 50</u>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감경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u>100분의 70</u>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p>	<p>----- ----- <u>100분의 100</u> ----- ----- -----.</p>
<p>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나.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과거 <u>3년간 2회</u>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u>100분의 20</u> 이내, 과거 <u>3년간 3회</u>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u>100분의 40</u> 이내, 과거 <u>3년간 4회</u>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u>100분의 50</u>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 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한 고발 건은</p>	<p>(2) -- <u>5년간 1회</u> ----- ----- ----- ----- ----- <u>100분의 40</u> 초과 <u>100분의 50</u> 이하, --- <u>5년간 2회</u> ----- ----- <u>100분의 50</u> 초과 <u>100분의 70</u> 이하, --- <u>5년간 3회</u> ----- ----- <u>5점</u> ----- <u>100분의 70</u> 초과 <u>100분의 90</u> 이하, <u>과거 5년간 4회</u>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u>100분의 90</u> 초과 <u>100분의 100</u> 이하 -----.</p>

현 행	개 정 안
<p>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p>	
<p>(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p>	<p>(다) <삭 제></p>
<p>(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 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p>	<p>(나) -- (가)의 ----- ----- 감경률을 -----.</p>
<p>(2) 조사·심의 협조에 대한 감경</p> <p>(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p>	<p>(2) 위원회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p>
<p>(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p>	<p>(가) <삭 제></p>
<p>(3)~(4) (생략)</p>	<p>(나) <삭 제></p> <p>(3)~(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라. <삭제></u></p> <p>3. 부과과징금의 결정</p> <p>가. (생략)</p> <p>(1) (생략)</p> <p>(가) (생략)</p> <p>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u>자본잠식</u> 상태에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2)~3) (생략)</p> <p>(나) 생략)</p> <p>1) (생략)</p> <p>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 인상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사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u>기하기</u>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p> <p>(2) (생략)</p> <p>(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u>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u></p>	<p><u>라. <삭제></u></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1) ----- --- <u>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u> ----- ----- -----.</p> <p>2)~3)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 ----- ----- ----- ----- ----- ----- <u>도모하기</u> ----- -----.</p> <p>(2) (현행과 같음)</p> <p>(가) ----- ----- ----- ----- <u>자본잠식률</u>-----</p>

현행	개정안
<p>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위의 두 경우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p> <p><신설></p> <p><신설></p> <p>[별표] 세부평가 기준표</p>	<p>----- ----- ----- ----- ----- ----- -----.</p> <p><u>4. 조사·심의협조 감경 취소</u> <u>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시에 적용한 IV. 2. 다. (2)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u></p> <p><u>가. 위반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한 경우</u></p> <p><u>나. 위반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이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u></p> <p><u>부칙 <제2026-00호, 2026. 7.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u></p>

현 행

1. 점수 산정 방식
2. 세부평가 기준표

참작 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위반 행위 내용	부당성/거래조건악화	0.3		(생략)	(생략)	(생략)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1년 초과 3년 미만인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생략)						
위반 행위 정도	(생략)					

개정안

1. (현행과 같음)
2. 세부평가 기준표

참작 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위반 행위 내용	부당성/거래조건악화	0.3		(생략)	(생략)	(생략)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생략)						
위반 행위 정도	(생략)					

현 행	개 정 안
<p>I. 목적</p> <p>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u>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I. ---</p> <p>-----</p> <p>-----</p> <p>-----</p> <p>----- <u>제19조</u></p> <p>-----</p> <p>-----</p> <p>-----</p> <p>-----</p> <p>-----</p> <p>-----</p>
<p>II. 정의</p> <p>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p> <p>“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u>기본산정기준을</u>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기준“이라 한다.)</p> <p>4. 부과과징금</p> <p>“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p>	<p>II. ---</p> <p>2. -----</p> <p>-----</p> <p>-----</p> <p>-----</p> <p>----- <u>기본 산정기준을</u> -----</p> <p>-----</p> <p>-----</p> <p>4.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담능력, <u>당해</u>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p>	<p>-----<u>해당</u>----- ----- ----- ----- ----- -----.</p>
<p>5. 위반기간</p> <p>가. (생략)</p> <p>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p> <p>(1)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u>당해</u>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p> <p>(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u>당해</u>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p>	<p>5.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p> <p>(1) ----- ----- ----- <u>해당</u> ----- ----- -----.</p> <p>(2) ----- ----- <u>해당</u> ----- ----- ----- ----- -----</p>

현 행	개 정 안
<p>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p> <p>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한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p> <p>1) (생략)</p> <p>2) 위 표의 고발은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이하 “<u>공정거래법</u>”이라 한다) 제1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p> <p>다. (생략)</p> <p>9. 조사 개시일(IV.2.나. 관련)</p>	<p>----- ----- ----- ----- -----.</p> <p>나. ----- ----- ----- ----- ----- ----- -----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법 제33조 ----- ----- ----- ----- -----.</p> <p>다. (현행과 같음)</p> <p>9. -----</p>

현 행	개 정 안																								
<p>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u>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u></p> <p>나. (생략)</p> <p>IV. 과징금의 산정</p> <p>1. 기본 산정기준</p> <p>가. (생략)</p> <p>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중대성의 정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과기준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2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0% 이상 80%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이상 60%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 40% 미만</td> </tr> </tbody> </table> <p>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u>기본산정기준</u>을 도출한다.</p>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p>가. ----- <u>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p> <p>나. (현행과 같음)</p> <p>IV. -----</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중대성의 정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과기준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2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90% 이상 100% 이하</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 이상 2.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u>75% 이상 90% 미만</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2 이상 1.4 미만</u> <u>1.2 미만</u></td> <td style="text-align: center;"><u>50% 이상 75% 미만</u> <u>40% 이상 50% 미만</u></td> </tr> </tbody> </table> <p>다. ----- ----- ----- ----- <u>기본 산정기준</u> ----- -----.</p>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u>90% 이상 100% 이하</u>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u>75% 이상 90% 미만</u>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1.2 이상 1.4 미만</u> <u>1.2 미만</u>	<u>50% 이상 75% 미만</u> <u>40% 이상 50% 미만</u>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u>90% 이상 100% 이하</u>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u>75% 이상 90% 미만</u>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1.2 이상 1.4 미만</u> <u>1.2 미만</u>	<u>50% 이상 75% 미만</u> <u>40% 이상 50% 미만</u>																							

현행			개정안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3억 5천만원 이상 4억 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2억 5천만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
				1.2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p>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p> <p>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p> <p>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한다.</p> <p>(1)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p> <p>(2) 과거 5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p> <p>(3) 과거 5년간 2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p>			<p>2. -----</p> <p>-----</p> <p>나. -----</p> <p>---</p> <p>(현행과 같음)</p> <p>(1) -----</p> <p>-----</p> <p>-----</p> <p>----- 90 초과 -----</p> <p>- 100 이하</p> <p>(2) -----</p> <p>-----</p> <p>-----</p> <p>----- 70 초과 ----- 90 이하</p> <p>(3) -----</p> <p>-----</p>		

현 행	개 정 안
<p>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p> <p>(4)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p>	<p>-----</p> <p>-- <u>50 초과</u>----- <u>70 이하</u></p> <p>(4) -----</p> <p>-----</p> <p>-----</p> <p>-- <u>40 초과</u> ----- <u>50 이하</u></p>
<p>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p> <p>가. (생략)</p> <p>나. 위반사업자가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가중</p> <p>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p> <p>(가)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의 원상 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p> <p>(나)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를 50% 이상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p>	<p>3. -----</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p> <p>----- <u>30</u> -----</p> <p>다. -----</p> <p>-----.</p> <p>(1) -----</p> <p>-----</p> <p>(가) -----</p> <p>-----<u>상당부분을 원상 회복 하는 등</u>----- <u>상당부분</u></p> <p>----- <u>10</u> -----</p> <p>-----</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p> <p>(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 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p> <p>(2) <u>조사·심의에 협력한 경우</u></p> <p>(가) <u>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u></p>	<p><삭 제></p> <p>(나) -- (가)----- ----- ----- ----- 감경률----- -----.</p> <p>(2) <u>위원회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나) <u>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u></p> <p>(3) (생략)</p> <p>4. 부과과징금의 결정</p> <p>가. (생략)</p> <p>(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p> <p>(가) (생략)</p> <p>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u>자본잠식</u>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통계법」에</p>	<p><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1) ----- ----- <u>조정 기준</u>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1) ----- ----- <u>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u> ----- <u>조정기준</u> -----.</p> <p>2) ----- ----- ----- -----</p>

현 행	개 정 안
<p>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p> <p>(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치더라도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p>	<p>-----</p> <p>-----</p> <p>-----</p> <p>-----</p> <p>-----</p> <p>-----</p> <p>-----</p> <p>----- <u>조정기준이</u> -----</p> <p>----- <u>조정기준의</u> -----</p> <p>-----.</p> <p>3) -----</p> <p>----- <u>조정기준</u> -----</p> <p>-----.</p> <p>(나) -----</p> <p>-----</p> <p>-----</p> <p>----- <u>조정기준</u>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서 상 위반사업자의 <u>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u>, 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p> <p>(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p>	<p>----- <u>자본잠식률</u>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나) -----</p> <p>-----</p> <p>-----</p> <p>----- <u>조정기준</u>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u>조정기준</u> -----</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3) 위반사업자는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총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p> <p>-----.</p> <p>(3) ----- <u>조정기준</u></p> <p>-----</p> <p>-----</p> <p>-----.</p> <p>-----</p> <p>-----</p> <p>----- <u>조정기준</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u>5. 조사·심의협조 감경 취소</u></p> <p><u>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시에 적용한 IV. 3. 다. (2)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p> <p>가. 위반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 한 경우</p> <p>나. 위반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이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p> <p>부칙 <제2026-00호, 2026. 7.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2. 참작사항별 점수 및 비중치

현행					개정안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참작사항	비중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부당성	0.4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보통인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 내용	0.3	· <u>경영활동 간섭 금지(법 제10조),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2조) 위반행위</u>	· <u>구입강제 행위의 금지(법 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법 제7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법 제8조), 물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법 제9조) 위반행위</u>	· <u>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법 제11조) 위반행위</u>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0.2	·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당기순이익·영업수익률 악화 등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가 경미한 경우		0.3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보통인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 법 조문의 수	0.2	· 동시에 3개 이상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 동시에 2개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 1개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정도	0.1	· <u>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u>	· <u>3개년 평균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u>	· <u>3개년 평균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인 경우</u>
피해 대리점의 비율	0.2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0.1	·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당기순이익·영업수익률 악화를 현저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당기순이익·영업수익률 악화를 상당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가 경미한 경우
					0.1	· 동시에 3개 이상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 동시에 2개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 1개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0.1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